

## ●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-143호

「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일부개정훈령안」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4월 18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### 「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일부개정훈령안」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「국가유산기본법」(‘23.5.16.)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(‘23.3.21.)의 제정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(‘23.8.8.)에 따라, 법률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, 「정부조직법」(‘24.2.13.)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소관 훈령(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)을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가. 「국가유산기본법」(‘23.5.16.), 「정부조직법」(‘24.2.13.) 등 법률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(문화재→국가유산 등) 및 조직명칭(문화재청→국가유산청) 등 변경

개정안	행정규칙 명	개정 내용
안 제1조	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	
안 제2조	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	○ 「문화재보호법」 →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등 제명 변경
안 제3조	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,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	
안 제4조	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	
안 제5조	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	○ 문화재→국가유산/문화유산, 무형문화재→무형유산,
안 제6조	K-콘텐츠 수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	매장문화재→매장유산 등
안 제7조	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	○ 문화재청→국가유산청,
안 제8조	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	문화재청장→국가유산청장
안 제9조	옛 전남도청 5·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	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(참조: 규제개혁법무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서 제출

-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#### 나.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우편번호 3011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
- 전자우편: [hjk8812@korea.kr](mailto:hjk8812@korea.kr)
- 팩스: 044-203-3456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([www.mcst.go.kr](http://www.mcst.go.kr)) 자료공간-법령자료-입법·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,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(전화 044-203-2258, 팩스 044-203-345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